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47호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교복·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학년 학생으로 함.(안 제4조)

나.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미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입학준비금은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나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참조)

1)「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

2)「초중등교육법」 제2조

3)「출입국관리법」 제31조

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765,640천원 예산 편성 ※서울시, 교육청 매칭사업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4. 14. ~ 2022. 5. 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복·단체복·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양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 금액이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앞면)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학교명					
주 소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 입학준비금 수령자 선택(□ 부모 또는 보호자, □ 학생)

※ 보호자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만 학생 선택, 단 만14세 미만 지급 불가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뒷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제공기관 : **해당기관 및 연계 기관**
2.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입학지원금 지원**
3. 수집항목 및 제공항목
   - **수집항목 : 학생(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학교정보)**
     부모 또는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제공항목 : 입학지원금 수령자의 성명, 연락처**
4. 이용 및 보유 기간 :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완료시까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성명 : _____ (서명)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 략)

②~④(생 략)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 3. (생 략)